



2015년 퇴직연금 가입자 특징

이상우 수석연구원

2015년 12월 말 기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특징은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도입률이 낮고, 특히, 숙박 및 음식점 업종에서 도입률이 6.6%로 가장 낮음. 가입 근로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1.7배 많고, 근속기간이 길수록 가입률이 높으며, 제도 가입기간 5년 미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. 퇴직연금 중도 인출은 남성, 30~4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택구입의 인출 사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함. 퇴직연금의 수급은 연금수급이 1.5%에 불과하는 등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수급함.

■ 통계청(2016)¹⁾의 발표에 의하면 퇴직연금제도 시행 10년만인 2015년 12월 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와 사업장²⁾ 도입률은 각각 125조 7천억 원과 27.2% 수준임.

- 근로자 규모별 사업장 도입률은 5인 미만 12.0%, 5~9인 28.6%, 10~99인 52.4%, 100인 이상 76.3% 순으로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도입률이 낮음.
- 산업군별 사업장 도입률은 금융 및 보험업이 60.3%로 가장 높고, 제조업은 37.3%, 숙박 및 음식점업은 6.6%로 저조함.
- 도입기간별로는 3~5년 미만 사업장 비중이 31.8%로 가장 높고, 1~3년 미만 29.5%, 5년 경과 23.5%, 1년 미만 15.2%의 순으로 높음.

■ 퇴직연금 가입 성별 구성비는 남성(62.7%)이 여성(37.3%)보다 1.7배 높지만 근로자 가입률은 남성 50.0%, 여성 43.1%로 큰 차이가 없음.³⁾

- 연령대별 가입률은 30대(54.4%)가 가장 높고, 40대(49.4%), 20대(45.1%), 50대(44.6%) 순임.

1) 통계청(2016, 12, 9), “2015년 퇴직연금통계”.

2) 사업장은 기업과 달리 영리·비영리 사업체를 포함하는 용어임.

3) 이는 여성 가입률에서 분모인 여성 근로자 수가 남성보다 적어 여성 가입률이 높아 보이는 효과 때문임.

- 남성 가입률은 30대(57.6%), 40대(54.0%), 50대(47.5%), 20대(43.7%) 순으로 높으며, 여성은 30대(49.2%), 20대(46.2%), 40대(42.1%), 50대(40.3%) 순임.

■ 퇴직연금 근로자 가입률은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기간이 길수록 높으며, 가입기간은 5년 이상이 21.7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.

- 근속기간별 가입률은 10~20년 미만(62.5%), 5~10년 미만(59.5%), 3~5년 미만(54.1%), 3년 미만(34.2%) 순임.
- 이는 평균 근속기간 등 고용안정성이 높은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높기 때문임.
- 가입기간별로는 1~3년 미만(28.9%)이 가장 높고, 다음으로 3~5년 미만(26.5%), 1년 미만(22.5%), 5~10년 미만(20.1%), 10년 이상(1.6%) 순임.

■ 개인형IRP⁴⁾ 누적 가입자 수가 747,226명이지만 2015년에 비슷한 수의 가입과 탈퇴가 발생하였음.

- 2015년에 이·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금을 개인형IRP로 이전한 수는 784,530명이며, 개인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개인형IRP를 해지한 사람의 수는 717,155명임.
- 이에 따라 개인형IRP 누적 적립금은 10조 8천억 원이고, 2015년 신규 이전금액과 해지환급금 규모는 각각 10조 7천억 원, 9조 5천억 원 규모임.
- 가입자 구성비는 남성 63.8%, 여성 36.2%이나, 적립금 규모는 남성이 84.5%를 차지함.
- 적립금의 성별차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평균소득이 높고 근속연수가 길기 때문임.
- 성·연령별로는 남성 가입자 중에서 40~50대가 62.4%를 차지하고, 여성 가입자 중에서 30~40대가 63.4%를 차지함.

■ 퇴직연금 중도금 인출⁵⁾의 특징은 남성, 30~40대, 주택구입의 사유가 두드러지게 나타남.

- 퇴직연금 적립금 중도 인출 건수(31,399건) 중에서 남성이 77.6%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.
- 연령별 중도인출은 30대가 46.5%로 가장 많고, 40대(33.1%), 50대(13.6%), 20대(5.4%), 60대(1.4%) 순임.
- 중도인출 사유는 주택구입이 15,808건(50.3%)으로 절반 이상이고, 장기 요양이 26.5%, 대학등록금·혼례비·장례비 등이 10.5% 순으로 많음.

4) 근로자가 자기부담으로 가입하거나 퇴직 일시금을 개인형IRP로 이전하는 개인통산장치로 활용함.

5)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(제22조)은 주택구입, 무주택자 전세금, 의료비, 천재지변,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적립금 중도인출을 허용함.

■ 퇴직연금 수급자와 수급액은 각각 202,261명, 3조 1천억 원 규모이고,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수급함.

- 수급방법은 일시금 수급자가 98.5%를 차지하고 연금 수급자는 1.5%에 불과함.
- 일시금 수급자 비중은 남성(54.1%)이 여성(45.9%)보다 다소 높으나, 수급액 비중은 남성이 현저(86.4%)하게 높은 수준임.
- 연금수급자와 수급액 비중은 남성이 대부분(각각 89.8%, 92.7%)을 차지함.

■ 제도 시행 10년 동안 적립금 규모 등에서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, 중소기업의 낮은 제도 도입률, 짧은 적립기간, 개인형IRP의 대규모 이탈, 1%대에 불과한 연금수령 등은 퇴직연금제도를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. [kiri](#)